



제252회 임시회
2006. 7.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
일부 개정 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□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.

□ 2006년 7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, 「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개정이유는

-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서 운영중인 보령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및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료와의 형평성을 맞추고, 충청북도 학생외국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며
-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과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을 타 시·도 교직원 수련시설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
□ 주요 내용은,

- 안 제2조에 공공기관의 범위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추가하고

- 안 제30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서는 충청북도 교육청 수련 시설을 타시·도교육감과 협약 체결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였고
- 안 제36조의2에서는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사용자에 대한 숙식비 및 교재대 등 징수근거를 정하였으며
- 안 제36조의3에서는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
- 안 별표 3의 수련원 및 야영장 사용료 징수금액중 충청북도 학생종합수련원 보령시설의 『교직원 및 교직원가족』 과 『공공 단체 및 기타』 에서 징수하는 숙박비를 각각 10,000원씩 증액 하였습니다.

□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의 개정은 2005년 12월 8일에 개원하여 운영중인 충청북도학생 외국어교육원의 사용료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명확하게 하였고,

-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과 충청북도직원복지회관을 타시·도 교직원 수련 시설과 연계 활용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 및 교직원과 학생의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

-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보령시설의 숙박비를 운영의 현실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성 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다만, 시도교육청간 교직원 수련기관 공동이용에 따른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협정서 체결 실적과 타시도와의 공동이용에 따른 도내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이용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, 「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